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기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003 발의연월일: 2024. 10. 29.

발 의 자:한기호·김종양·김선교

김기현 · 임종득 · 서천호

김용태 • 강선영 • 김정재

윤한홍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병과장(兵科長)이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후 2년이 지나면 당연 전역되며, 전직된 유사 직위에서의임기를 연장하거나 연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.

그런데 병과장이 유사 직위 전직 후 2년이 경과하여 전역 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전시·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으로 정상적인 보직 교체가 어려운 경우 또는 후임자가 현재 해당 병과장으로서 임기를 만료하지 않아 즉시 보직이 어렵거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등에서는 해당 전직 직위가 공석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.

특히 병과장이 전직하는 직위는 대부분 국방부에서 해당 병과의 소 관 업무를 통할하는 부대장으로서 국방 운영상 매우 중요한 직책이므 로 해당 업무의 중단 없는 운영이 요구되는 자리임.

이에 전시 · 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전직 지위

의 임기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국 방 운영 및 해당 직위의 공석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). 법률 제 호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3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4항"을 "제5항"으로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병과장이 유사 직위에 전직된 경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전직된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났을 때에는 전역된다. 다만, 전시·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병과장 임명) ①・② (생	제21조(병과장 임명) ①・② (현
략)	행과 같음)
③ 병과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	③
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(제2	
항 단서에 따라 연임된 경우에	
는 그 연임된 임기를 포함한	
다)를 마쳤을 때에는 다시 그	
직위에 임명되지 아니하며 유	
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되지	
아니하면 전역된다. <u>다만, 유사</u>	<u><단서 삭제></u>
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	
후 2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	
<u>다.</u>	
<u><신 설></u>	④ 제3항에 따라 병과장이 유
	사 직위에 전직된 경우 그 임
	기는 2년으로 하며 전직된 직
	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
	그 임기가 끝났을 때에는 전역
	된다. 다만, 전시·사변 또는
	<u>국방상 필요할 때에는 국방부</u>
	<u>장관이 1년 이내의 범위에서</u>
	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.
<u>④</u> (생 략)	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

<u>⑤</u> 제1항부터 <u>제4항</u> 까지의 규	<u>⑥</u>
정에서 병과장이란 각군 해당	
병과 출신 장교 중에서 병과의	
장으로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.	